

商標 사용의 문제점

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밝혀 두고 자 하는 것은 [주어진] 과제가 나의 전공분야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망서려지는바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신농약개발 및 산업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로 생각되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현실적인 면에서 보고 들은바를 정리하여 기술하려는 것이니 이점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며 참고자료로 활용 되었으면 한다.

1. 상표(商標, Trade Mark)의 개념 및 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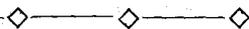
「상표라함은 상품을 업(業)으로서 생산, 제조,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特別顯著)한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나라 상표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다.

원래 상표의 정의가 법문화(法文化)된 것은 1946년 미국의 상표법에서부터 유래되었으며 그 전에는 이 상표가 상관습상(商慣習上) 또는 일반 통념에 따라 호칭되고 있었을 뿐이다. 1946년 미국은 그들의 상표법(45조)에 상표의 정의를 「상표라함은 제조업자 또는 상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명칭, 표상(表象), 의장(意匠) 또는 그들의 결합을 말한다」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이 상표의 정의를 대다수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명문화하여 법에 밝혀두고 있으나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을 학설에 위임하고 있다.

이 상표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상표는 표장(標章)으로서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을 의미하며 둘째, 이는 반드시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자가 그 상품에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성이 명료하고 특별현저성이 있어 자타상품을 구별할수 있는 심볼(상징 : Symbol)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타상품을 구별하므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일반거래자 또는 소비자에게는 당해 상품이 어떤 업자에게서 나오는 어떤 품질의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표법(2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배타적(獨點排他的)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표를 그 기능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첫째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며 이를 바

탕으로 하여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도 따라서 발휘되게 마련이다. 또한 상표는 생산자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함으로서 자기상품의 우수성 내지 특이성을 수요자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둘째로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산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가를 최종소비자에게까지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생산자는 자기 업체의 책임하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또한 상품의 품질에 있어 타상품과 비교하여 그 우수성과 특이성을 유지하여 나가므로써 신뢰도를 축적하게 되고 따라서 수요자 즉 고객을 획득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상표는 상품의 품질보증기능을 갖게되며 이로써 소비자는 상표만을 믿고 그 상품에 품질의 우수성 및 특이성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생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게되어 상표의 광고적 기능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부수적으로 재산적 기능도 나타나게 된다. 상표는 이와같이 그 기능면에서 무엇보다도 한 상품의 품질의 우수

◇ 상표 사용의 문제점 ◇

성 및 특이성을 보증하여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상표는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을 인정하게 되고 따라서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하므로써 실수요자에게 상품의 오인, 혼동에 의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케 하고 합리적인 유통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준다.

이에 따라 상표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법 제 1조에 「상표를 보호하므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상표제도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표제도가 확립되어 상표를 보호하므로써 상표는 다음 두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 산업발전에 기여 :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었을 때에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도 하고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상표를 매개로한 일종의 신용관계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 신용관계로 말미암아 상품의 유통질서가 확립되면 결국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2) 수요자의 이익보호 : 또한 상표는 그 상품의 얼굴로서 생산자의 신용을 돈독케 하므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제도

는 상표를 보호하고 이와 유사한 상표의 출현을 방지하므로써 상표의 품질을 보증케 되어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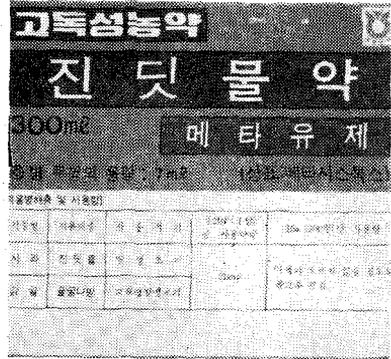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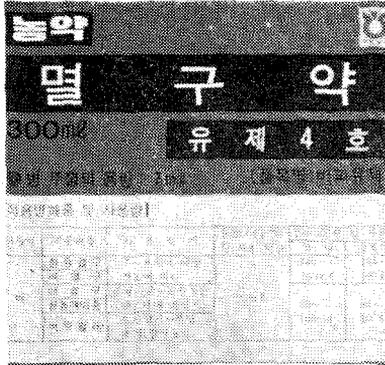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표 보호를 위한 상표제도는 품질보증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발전과 실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키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작물의 병해충방제에 쓰지 않을 수 없는 농약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우리나라의 현행 농약 상표 사용과 외국의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로부터 농약의 종류수가 많고 상표가 어려워 의올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혼돈을 초래하기 쉽다는 불평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는 부득이 1975년 농약의 포장지 및 농약의 공공 인쇄물에 주대상병해충을 지정하여 농약명(예 : 벼이화명나방약, 벼도열병약, 논잡초약)으로서 크게 표시케 하고 상표를 아주 적게 나타내도록 규제하였고 이를 다시 1981년부터는 농약품목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유효성분 즉, 주성분이 같은 농약은 같은 품목으로 통합하여 아래 예시한 바와 같이 수도농약은 기호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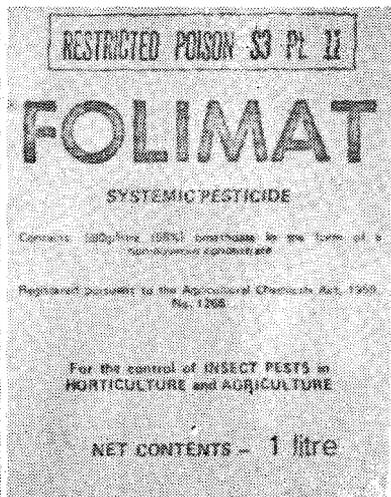
수도용약제 포장지

원예용약제 포장지



일본의 농약포장지

뉴질랜드 농약포장지



◇ 상표 사용의 문제점 ◇

농약은 품목명으로서 크게 표시케 하고 상표는 아주 작게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에 더우기 새로이 고시 및 등록되는 농약(1981. 2. 26 이후)에 대하여는 상표사용을 일체 불허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상표를 못쓰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미 고시등록되어 시판되고 있는 농약에 대하여도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예시한 바와 같이 농약의 품목명과 연관하여 상표의 상대적인 크기 색상 및 위치 등에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농약상표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일본에서 1950년대 제노(全農)가 상표를 규제하고 품목명 내지 기호로서 대처시키려고 제의하였다가 실천치 못하고 좌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재 양약품에 대해서는 몇몇 나라에서 상표제한에 관해 물의를 이르고 있다하며 인도에서만 실제 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 상표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농약상표사용제한에 다른 문제점

우리나라 농민들로부터 농약의 중

류수 및 외래어 상표 사용에 관한 잇따른 불평 때문에 정부는 부득이 품목수를 줄이고 상표사용의 제한 조치를 가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볼 때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두둔하여 퇴보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농민제몽, 홍보활동 및 교육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실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농약에 있어서 외래어 상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원제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 때문이며 이는 국제관계상 원제개발기업체의 특허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하고 나아가 국제교역상 외래상표의 인정 및 상표의 허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우리나라 농민을 위해서도 상표를 사용토록 하므로써 품질보증면에서 농민들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득(得)을 기할수 있다고 본다.

농약의 종류수가 많다는 불평이 있으나 이는 이웃 일본과 그 농약품목 및 상표수를 비교하여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즉 품목수는 일본의 6분의 1, 상표수는 일본의 16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농약품목 및 상표수 비교(1981)

	품목수	상표수
한국	230	261
일본	1,368	4,250

이와 같은 불평에 따라 종류수를 줄이므로써 기술적인 면과 실제 농약 선택면에서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 농약의 종류수를 줄일수록 결과적으로 저항성유발을 더욱 빨리 일으키게 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약효가 없다는 불평을 듣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농민의 농약 선택 및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된다.



현재 농민들의 피상적인 불평을 감안하여 농약상표사용에 규제를 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점을 갖게된다고 본다.

1) 상표사용에 제한조치를 가하므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자타농약의 식별을 곤란케 하고 따라서 제조회사표시기능을 흐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농약의 품질보증에 오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들면 진딧물약을 “메타”란 품목명으로 크게 표시 통칭되었을 때 주성분함량은 분석확인할 수 있으나 순도의 질 및 부자재의 확인은 현재 검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순도 및 부자재의 차이로 인하여 생물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메타의 부자재로서 유화제와 용제로 나눌 수 있는 이 두부자재간에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혼합비율이 회사에 따라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 품질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 농민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보기 쉽다. 이러한 예는 비단 “메타”에서 뿐만 아니라 타약제에서도 상표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부작용으로 품질보증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메타”에서와 같은 피해를 보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치로 인하여 농약의 품질보증이 어렵게 되고 제조회사와 농민들간에 신용

준법정기예외없다.너도질서너도질서

◇ 상표 사용의 문제점 ◇

관계가 멀어져 유통질서에 혼란을 이르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2) 이러한 제한조치는 법적인 면에서도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거래되고 있는 농약에 등록상표를 쓰지 못하게 함은 개인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부정이요, 또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23조에 저촉되는 일이며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크기 위치, 색상등의 표시상에 제한을 가함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2조 및 제57조의 규정 “상표란 타상품과 식별토록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고 본다.

3) 이러한 상표사용에 대한 규제는 개발회사의 의욕을 저하시켜 신농약개발의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새로운 농약판촉을 겸한 새로운 방제기술 및 병해충에 대한 기술보급, 의욕을 떨어뜨려 간접적으로 농민교육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4) 이와 같은 상표사용규제는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대열에 발 맞추어 국제교역을 도모하려는 의도에 어긋나며 세계 공업소유권 보호(상표포함)를 위한 국제협약(파리협약)에 정식으로 가입(1980. 5. 4)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도입 및 국내기술수준의 개선을 통한 수출을 권장시키려는 수출시책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크다.

◇ ◇ ◇
 끝으로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표사용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통하여 농약의 품질이 보증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신용거래 및 유통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좀더 많은 농약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농약업체의 생산책임 및 품질보장을 통하여 실수요자들의 피해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국제교역상에 체면손실 및 저해요인을 참작 하루속히 개선조치가 취해져기를 바라며 정책입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끝을 맺는다.

〈배상회·바이엘 농약 사업부〉

